

EU의 수입품 통제·관리 현황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1
<hr/>	
I. 한-EU 교역 동향	2
<hr/>	
II. EU의 수입물품 통제· 관리 현황	4
<hr/>	
4 1. EU의 수입물품 검사 제도	
8 2. EU의 위조물품 단속 제도(지식재산권 보호)	
III. EU의 통관행정 통합 움직임	11
<hr/>	
11 1. Customs 2020 프로그램	
13 2. 세관 위험관리 향상 액션플랜	
14 3. 세관정보포털(ECIP) 구축	
IV. 시사점	15
<hr/>	
[첨부]	17
<hr/>	
17 1. ENS 물품명세 예시	
19 2. EU 내 위조물품 적발 현황	

요 약

유럽연합(EU)이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의 수입물품 통제·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그동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동세관 등록번호(EORI) 등을 통해 공동통관정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플랜, 세관정보포털(ECIP)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관행정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물품 통제·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EU는 IT 기반의 ENS를 통해 수입물품 정보를 사전 파악한 후 각 회원국 세관의 재량 하에 수입물품 선별 검사 및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 증가로 인해 위험물이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 관련 위조품의 적발 비중이 70%를 상회하여 세관당국의 관심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EU는 적발된 물품에 대한 처분을 각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으며 통관행정이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EU 규제와 개별국 차원의 규제가 혼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사안별로 꼼꼼히 확인하여 통관을 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EU 통관행정은 한국 관세청의 UNI-PASS처럼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미 선진화된 전자통관 시스템 사용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은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U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비한다면 복잡한 통관의 문턱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한-EU 교역 현황

□ 개괄

- 2014년 7월까지 對EU 수출은 320억 달러, 수입은 370억 달러로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 2013년 對EU 수출은 489억 달러, 수입은 562억 달러로 74억 달러 적자

<한-EU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3,507	14.8	55,727	4.1	49,371	-11.4	48,857	-1.0	31,915	11.0
수입	38,721	20.1	47,424	22.5	50,374	6.2	56,230	11.6	36,920	15.0
수지	14,786	2.9	8,303	-43.8	-1,003	-112	-7,373	-635.1	-5,005	32.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EU FTA와의 관련성
 - 발효 전후 3개년을 비교한 결과 발효 전 대비 對EU 수출은 5.1% 감소했으나, 수입은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對EU 수출은 발효 초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원/유로 환율 하락세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 경기회복에 따른 반등세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 對EU 수출액 : ('08.7~'11.6) 1,588억 4,500만 달러 → ('11.7~'14.6) 1,508억 2,300만 달러
 수입액 : ('08.7~'11.6) 1,132억 4,700만 달러 → ('11.7~'14.6) 1,620억 1,400만 달러

<한-EU FTA 발효 후 연차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년차('11.7~'12.6)		2년차('12.7~'13.6)		3년차('13.7~'14.6)		발효전대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對EU 수출	50,788	-12.3	48,393	-4.7	51,642	6.7	1.7
對EU 수입	49,062	13.1	52,998	8.0	59,954	13.1	22.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1) 한-EU FTA 발효 이전(2008.7~2011.6) 동기 대비 발효 후 전체기간(2011.7~2014.6)의 對EU 수출입 증감률 기준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품목)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등으로 상위 10대 품목이 총수출의 약 56%를 점유

<對EU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3년		품목명	2014.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5,737	11.9	선박	4,014	-6.5
2	선박	5,684	-28.2	승용차	3,655	7.1
3	자동차부품	3,616	-2.3	자동차부품	2,284	12.2
4	무선전화기	2,780	8.9	평판디스플레이	1,585	-10.3
5	평판디스플레이	2,736	-30.3	제트유 및 등유	1,459	19.0
6	제트유 및 등유	1,970	-10.2	무선전화기	1,385	17.7
7	합성수지	1,882	31.3	합성수지	1,344	24.8
8	집적회로반도체	1,148	-1.3	집적회로반도체	714	1.4
9	칼라TV	1,132	83.3	건설중장비	686	25.4
10	건설중장비	887	6.5	칼라TV	581	19.3
	계	27,572(56.4%)		계	17,685(55.5%)	

- (주요 수입품목) 승용차, 나프타, 원유, 의약품,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으로 상위 10대 품목이 총수입의 약 37%를 차지

<對EU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3년		품목명	2014.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3,837	11.6	승용차	3,232	61.8
2	나프타	2,842	18.0	원유	2,304	19.1
3	원유	2,395	69.7	의약품	1,405	9.7
4	의약품	2,180	-14.8	반도체제조용장비	1,201	59.5
5	반도체제조용장비	1,734	1.1	항공기	1,129	736.3
6	자동차부품	1,625	20.9	자동차부품	1,062	16.6
7	원동기	1,534	5.5	합성수지	904	1.7
8	기타정밀화학원료	1,497	34.3	기타정밀화학원료	844	8.3
9	집적회로반도체	1,295	-1.6	펌프	754	43.6
10	펌프	1,271	8.1	나프타	731	-61.1
	계	20,210(35.9%)		계	13,567(36.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II EU의 수입물품 통제·관리 현황

1 EU의 수입물품 검사제도

□ 기본 규정 : ICS(Import Control System)

-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
 -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

□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신고 기한
 - 해상 운송 :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
 - 항공 운송 :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
 - 육상 운송 :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
- 의무 기재사항
 -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 EORI²⁾ 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 등
 - 물품명세 기재 시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함(구체적인 물품명세 예시는 첨부1 참조).

2) EU 공동 세관등록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2009년 7월 1일부터 EU 내 회원국별 세관 등록 번호를 통일하여 운영

○ 신고 예외품목

- 개인물품 : 여행객 개인가방, 편지·엽서 등
- 방산물자 : 국방용으로 사용되는 무기 및 군사장비
- 에너지 : 전선(전기), 파이프라인(천연가스)을 통한 반입 시
- 기타 : ATA³⁾ 및 CPD 까르네⁴⁾를 통한 물품, 비엔나협약(1961.04) 및 뉴욕협약(1969.12)에 따라 면제되는 물품 등

□ 수입제품 통관절차

○ 기본절차

- EU 도착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또는 억류)

○ 세부절차

- ①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
- ② 세관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 가능
- ③ 세관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세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 세관당국은 검사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하여 검사받아야 함.
 - 검사관은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물품 선별 검사)
 -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3) ATA 까르네 : ATA 협약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통상적으로 전시회를 위해 임시 수입되는 물품들이 대부분임.

4) CPD 까르네 : 운송수단의 일시적인 수입 무관세 통관 증명서로 주로 자동차를 이용한 해외여행시 필요

□ 물품 선별 검사

- 검사 대상 : 세관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
- 검사 기준
 -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검사 가능
 -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
 -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됨.
- EU의 수입물품 위험도 분류 체계(Risk Type)
 - **(Type A)** 역내 시장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로 DNL(Do Not Load) 메시지를 항공사 혹은 해운사로 통지하여 EU 내 하역을 금지함. 단, DNL 통지가 물품 출항 이후 전송된 경우에는 EU 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가 실시됨.
 - **(Type B)** 즉각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EU 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하역, 검사를 시행함.
 - **(Type C)** 심각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원래 예정된 EU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가 실시됨.
- 사례(프랑스)
 - 프랑스 가방 브랜드 Sequoia를 수입, 판매하던 한국의 A社는 국내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를 해상운송을 통해 프랑스로 돌려보냄.
 - 도착항인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항 세관에서는 해당 포워딩 회사에 위조품 여부가 의심된다며 물품 선별검사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검사에 필요한 가방을 샘플로 가져감.
 - 열흘간의 분석을 통해 진품임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의 EU(프랑스) 내 반입 및 역내 운송을 허가함.

□ 처벌 규정

- 원칙 : EU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에 의거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 일반적 요건
 - 불분명한 ENS 정보 전송 또는 제출시한 위반 등 경미한 위반
 - 세관 검사에 의해 위험물, 위조물품 등 불법적인 물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 각 회원국별 세부규정은 EU 차원에서는 통합·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
- 효과
 -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
 - 불법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압류 후 폐기 처분, 역외 반송 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제재도 가능
 -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물품 배송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세관이 책임지지 않음.
- 사례(벨기에)
 - 불분명한 ENS 정보를 전송하거나 제출시한을 위반하는 경우 25 유로 내외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폐기, 반송 외에도 중대한 범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징역형 선고 가능

2 EU의 위조물품 단속제도(지식재산권 보호)

□ 기본 규정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608/2013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당국의 수입품 통제 및 관리규정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608/2013’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음.
- 위조물품 반입 증가에 따라 단속 강화를 통한 EU 내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단속 대상 선별 기준

- ENS 정보 검토를 통한 세관당국의 임의 선별 심사(선별 심사)
- 지식재산권자의 신고에 따른 심사(신고 심사)
 - * 2013년 기준 지식재산권자 신고는 총 26,865건으로 2007년의 10,260건 대비 2.5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여 전체 심사의 97%를 차지함.

□ 단속 절차

- 기본 절차
 - 임의 선별 또는 신고 → 세관당국의 심사 여부 결정 및 통지 → 심사 → 이의제기 및 처분 결정(통관, 압류, 폐기 등)
- 세부 절차(신고 심사의 경우)
 - ① 지식재산권자, 세관당국 심사 요청(신고)
 -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품질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② 세관당국의 심사 여부 결정
 - 세관당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 심사 기간은 결정 다음날로부터 최대 1년

③ 심사

-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역류가 가능하고 세관당국은 수입자나 수입신고자(대리인)에게 제품 역류사실을 역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해당 제품의 지식재산권자(신고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통지할 수 있으며 수입자와 동시에 혹은 수입자에 대한 통지 후 최단시일 내에 이행해야 함.
- 세관당국은 심사 대상(역류) 물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샘플 채취도 가능함. 다만, 샘플은 검사 후 원상복구가 원칙임.

④ 이의제기 및 처분 결정

- 세관당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압류, 폐기 등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특히 지식재산권자가 서면을 통해 주장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에 대해 수입업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 가능
 - * 이의제기 기한 : 역류사실 통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부패 가능한 식품은 3일 이내)
- 폐기 처분되는 물품들은 상업용으로 EU 내 반입과 대외 수출이 금지되나 재활용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 가능

□ 조사비용

- 지식재산권자(신고자)의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실시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지식재산권자(신고자)가 지불해야 함.

□ 처벌 규정

- 원칙 : EU의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에 의거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 일반적 요건
 - 요건 : 위조물품으로 판결 확정

○ 효과

- 압류 후 폐기처분 혹은 벌금 등 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물품의 물량 및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회원국별로 상이)
 - * 2013년 기준 폐기처분 사례가 최다이며(76.85%), 소송 계류(15.04%), 지식재산권자의 무응답에 의한 반환(4.85%), 진품 판명으로 인한 반환(2.94%)이 뒤를 이음. 소송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0.01%에 불과함.
 - * 폐기처분은 지식재산권자의 확인 및 물품소유자(수입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함.

○ 사례(벨기에)

-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선고 가능

□ 향후 방향

- 집행위는 현재 EU 차원의 중앙 데이터베이스(Central Data Base)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늦어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
 - 각 세관당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 신고자 요청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 회원국과 공유하기 위해 동 시스템을 도입함.
 - 집행위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금번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종전 규정보다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출 예정

III

EU의 통관행정 통합 움직임

1

Customs 2020 프로그램

□ 기본 규정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1294/2013

- EU 회원국의 통관행정, 특히 범유럽 세관 IT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지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자통관(Paperless Customs)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함.

□ 주요 골자

- 추진기간 : 2014~2020년(7년간)
- 예산 : 5억 2,294만 유로(2007~2013년의 3억 2,880만 유로 대비 59% 증가)
- 대상 : EU 회원국, 가입 후보국 및 희망국 전체
- 주요 내용
 - 전자통관환경 조성
 -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 위험도 평가 개선

□ 세부 내용

- 전자통관환경(Paperless customs environment) 조성
 - 개별국의 세관 IT 시스템 개선 지원(전체 예산의 75% 배정 예정)
 - 향후 통관행정 통합을 위해 회원국 간 동일한 수준의 세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세관 직원 경쟁력 강화
 - 직원 교육을 통한 세관 시스템 이해도 제고, 특히 낙후지역의 세관 인력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e-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
- 위험도 평가 개선(Intelligent Risk Assessment)
 - 집행위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회원국 세관당국, 관련 정부 기관, 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
 - 신속한 물품 위험도 평가 및 AEO⁵⁾ 확대로 교역 활성화 기대

□ 추진 계획

- EU 집행위는 회원국별 세관 IT 시스템 개선, 세관 교육 이행 등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
- EU 부패방지국(OLAF; European Anti-fraud Office)과 합동으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회원국에 대한 행정적 처분 및 벌금 부과 예정
 - * 모니터링 결과는 추후 대외 공개 예정(시기는 미정)
- 집행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프로그램 관련 중간평가보고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

세관 위험관리 향상 액션플랜

□ 세관 위험관리 향상을 위한 EU 액션플랜 발표(2014.8)

- 주요 골자: EU 역내 통관행정 개선 및 통합 방향 설정
- 주요 내용
 - 통관행정 개선 및 통합 측면
 - ENS 효율성 개선, EU 역내 세관 IT 통합도 개선
 - AEO에 대한 자율심사(Self-assessment) 허용 등 혜택 확대
 - 기타 EU 안전행정과의 연계 측면
 - 육상, 해상, 항공 화물 통제와의 연계
 - 보건(식품, 동물 등) 및 환경보호 제도와의 연계
 - 위조 상품 통제 제도와의 연계

□ 연도별 주요 액션플랜

- 2014~2015년 : 현행 ENS 및 ICS 심층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014~2016년 : 위조물품 심사 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서 마련
- 2014~2020년 : AEO 제도의 취약점 파악 및 개선방안과 함께 수출입 과정에서 AEO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줄 수 방안 마련
 - 예시 : 신속하고 간편한 수출입 절차, 자율심사 제도 등
- 2016~2020년 : 회원국 간 원활한 ENS 정보 전송을 위해 세관 IT 시스템의 접근 용이성 강화(항공보안 포함)

3

세관정보포털(ECIP) 구축

□ 취지

- 그간 EU 및 회원국별 통관정책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전무했음.
 - 다만, 업계와의 교류 차원에서 EU 집행위가 역내외 46개 단체를 TCG(Trade Contact Group)로 지정하여 수시로 소통해 왔음.
 - * 주요 TCG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⁶), 국제항공운송협회(IATA⁷) 등
- EU 집행위는 2014년 1월 1일 유럽세관 정보포털(ECIP⁸)을 개설
 - 집행위는 동 포털을 통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EU 통관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됨.
 - * 유럽세관 정보포털(CEIP) 웹사이트 주소 : <http://ec.europa.eu/ecip>

□ 주요 제공 서비스

-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 세관 최신 정보 실시간 제공
- EU 통관정책 제·개정사항 안내(Customs Code 등)
- EU 일반 통관 절차 안내
- 각종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 회원국별 세관당국 정보
 - AEO, EORI 리스트
 - EU 화학물질 통관 목록(ECICS⁹)
 - EU 수출물품 추적(경로추적번호 MRN¹⁰)

6)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7)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8) 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9) European Customs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10) Movement Reference Number

IV 시사점

□ EU의 수입물품 통제·관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EU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물품 통합 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거래비용 감소 및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하고자 함.
- 다만,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 증가로 각 세관에서 위험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통관 지연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글로벌 경쟁 심화, 국경 간 직거래 증가 등으로 EU 산업 보호를 위한 위조물품 단속 및 처벌도 계속 강화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4년 말까지 EU 차원의 종합 D/B도 구축할 예정임.
- 위조물품 단속은 대부분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신고에 따라 실시되는 바, EU 기업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 최근 국제우편(EMS)을 이용한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데, EU에서는 우편 관련 위조물품 적발사례가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세관당국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적발된 물품에 대한 처분 및 처벌은 각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음.
 - 따라서 현지 바이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EU의 통관행정 통합 가속화

- ENS, AEO, EORI 등의 제도 정착에 성공한 EU는 IT에 기반을 둔 역내 통관행정의 전면 통합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EU의 경제통합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예상됨. EU 회원국 확대에 따른 국가 간 격차를 IT, 직원 교육을 통해 얼마나 신속히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이미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은 적응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EU 차원, 개별국 차원의 규제가 혼재되어 사안별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함.

- 2014년 EU 세관 종합 포털 서비스 'ECIP'를 개시함.
 - EU 통관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위주의 초기 단계이나 통관행정 통합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세청의 UNI-PASS¹¹⁾처럼 EU 내 모든 통관행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1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첨부1 ENS 물품명세 예시

모호한 물품명세 (Unacceptable)	정확한 물품명세 (Acceptable)
농산품	오렌지, 생선, 쌀, 곡물
구급용품	담요, 의약품
동물	말, 닭, 소
의류	남성셔츠, 속옷, 여자조끼, 재킷
가전제품	냉장고, 스토브, 전자레인지, 오븐, 커피머신
자동차 부품	자동차 브레이크, 전면유리
마개	플라스틱 마개
위험한 화학약품	실제 화학 명칭(상표이름은 사용 불가)
위험하지 않은 화학약품	실제 화학 명칭(상표이름은 사용 불가)
세척제	알코올, 세제
필기제품	연필, 스마트 보드(Smart boards), 책
전자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CD 플레이어, 워크맨, 테이프 녹음기, 핸드폰, 모니터, 프린터
장비	유정(油井) 장비, 양계 기계
화물 관련 전제품	(표에서 구체적 예시 참조)
식품	음료, ('농산품' 예시 참조)
일반 화물	(표에서 구체적 예시 참조)
선물	인형, 원격조정 자동차
가정용품	접시, 탁보 ('가전제품' 예시 참조)
공산품	('전자제품' 예시 참조)
강철제품	철 파이프, 강철 파이프, 철 구조물, 강철 구조물
IT 용품	('전자제품' 예시 참조)
가죽제품	안장, 가죽가방, 가죽재킷
기계부품	펌프, 실, 엔진

모호한 물품명세 (Unacceptable)	정확한 물품명세 (Acceptable)
기계류	금속공작기계, 담배 제조기기, 재봉틀, 인쇄기
기계	(‘기계류’ 예시 참조)
유류	광물성유, 식물성유
광석	철광석, 구리광
부품	(‘기계부품’ 예시 참조)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강철 파이프, 구리 파이프
식물	튤립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주방용품, 플라스틱 가사용품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 섬유, 폴리우레탄 의료장갑
압축가스	(‘화학약품’ 예시 참조)
고무제품	고무호스, 고무 컨베이어 벨트
봉/막대	용접봉, 연료봉, 구리막대
위생용품	수건, 양동이, 세제, 치약
파편	플라스틱 파편, 발포 파편, 철 파편
예비품	(‘기계부품’ 예시 참조)
직물	리넨 직물, 티셔츠, (‘의류’ 예시 참조)
공구	수공구, 전동공구
장난감	(‘선물’ 예시 참조)
수송 수단	배, 자동차, 자전거
무기	단도, 기관총
전선	철 및 강철 전선, 구리선
목제품	목재가구, 목재 주방용품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첨부2 EU 내 위조물품 적발 현황

- (품목 수) 2013년 EU 세관을 통해 약 3,594만 건의 위조물품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10% 줄었으며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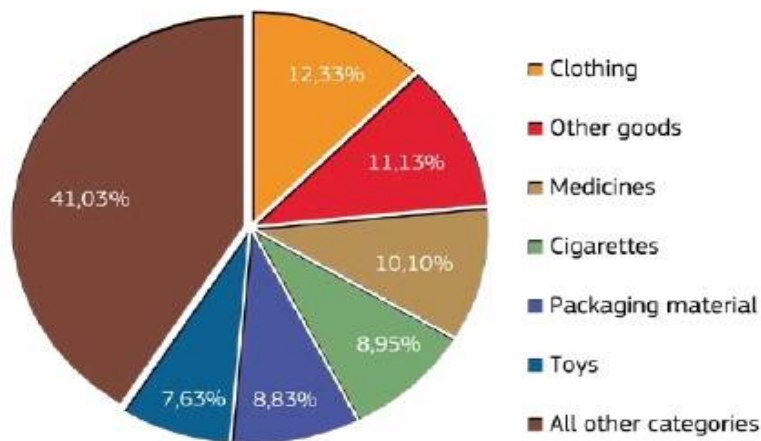
<연도별 위조물품 수>

(단위: 백만 건)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품목 수	79	179	118	103	115	40	36

- 품목별로는 식품, 주류, 보석 및 액세서리, 휴대전화 등의 적발이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한 반면, 토너 및 카트리지, 스포츠용품, 담배 등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함.
- 단일 품목으로는 옷, 의약품, 담배 등이 주를 이루며, 기타·일반 품목에는 살충제, 전등, 본드, 배터리, 공기정화제 등이 있음.

<품목별 위조품 적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적발건수) 2013년에는 전년대비 4% 감소한 총 86,854건이 적발되었으나 이는 2007년 대비로는 98.9% 증가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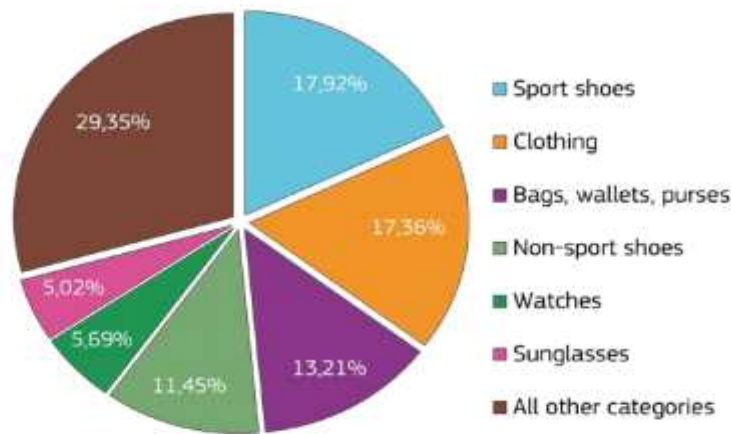
<연도별 위조물품 적발 건수>

(단위: 건)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적발건수	43,671	49,381	43,572	79,112	91,254	90,473	86,854

- 품목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인한 국제우편 송달의 증가 때문으로 보임.
- 단일 품목으로는 운동화, 의류, 개인 액세서리(가방, 지갑 등)가 주를 이루며, 기타·일반 품목에는 향수·화장품, 휴대전화 및 부품, 시청각 장치 등이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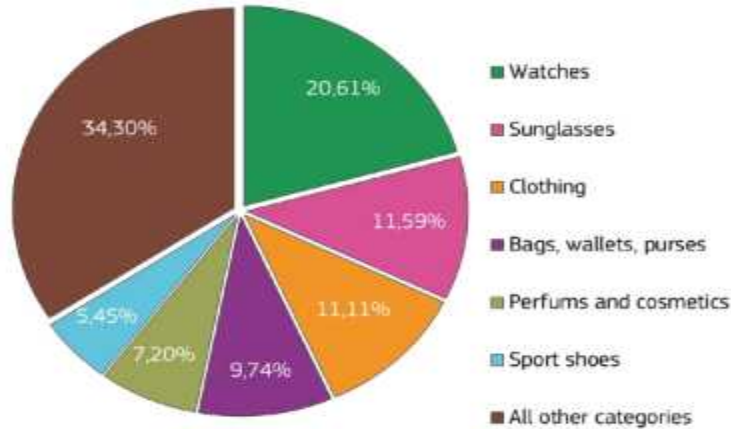
<건수별 위조품 적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가액) 소매가격 기준 총 7억 6,822만 7,929 유로 규모가 적발되었으며 시계, 선글라스·안경, 의류, 개인 액세서리(가방, 지갑 등), 향수·화장품 등이 주를 이룸.

<가액별 위조품 적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피해국)** 품목수 기준으로 위조물품을 다수 적발한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순이며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순
- **(가해국)** 적발된 물품의 79.43%가 중국(홍콩 13.31% 포함)산으로 최다이며 그리스(5.83%), 터키(3.68%), UAE(2.49%) 등이 뒤를 이음.
 - 중국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의류, 포장재료, 장난감, 가액 기준으로는 시계, 선글라스·안경, 의류가 주를 이룸.
 - * 가액 기준으로도 중국이 80.15%를 차지(홍콩 7.72% 포함)하며, 터키(7.42%), 말레이시아(3.00%)가 뒤를 이음.
 - 한편 우리나라는 가액 기준 0.77%로 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기계, 공구류에서 2.85%로 중국(홍콩 포함 96.41%)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운송수단)** 품목(Articles) 및 가액(Value) 기준 해상운송을 통한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따른 국제우편 송달 증가로 건수(Case) 기준으로는 우편이 최다를 기록
 - 품목 수 기준 : 해상(62.62%), 우편(14.47%), 육상(11.92%), 항공(10.83%), 철도(0.17%)
 - 가액 기준 : 해상(66.10%), 항공(10.95%), 우편(14.76%), 육상(8.06%), 철도(0.13%)
 - 적발건수 기준 : 우편(72.51%), 항공(17.32%), 육상(5.75%), 해상(4.4%), 철도(0.03%)



작성자

- | | |
|----------|--------|
| ◆ 브뤼셀무역관 | 이재욱 과장 |
| ◆ 브뤼셀무역관 | 김도연 대리 |
| ◆ 선진시장팀 | 이연주 과장 |
| ◆ 선진시장팀 | 이동훈 대리 |



Global Market Report 14-034

EU의 수입품 통제·관리 현황 및 시사점

-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김성수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0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